# 물 품 공 급 계 약 서

계약날짜: \_2012. 04. 12.

"갑": 주식회사 원익IPS

대표이사 : 이 물 등

주 소 : 경기도 평택자 진위면 청호리

332-1번지

"을": 파스콘

대표이사 : 금 동

주 소 : 경기도 부친 구 삼정동

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102동1207호

주식회사 원익IPS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파스콘(이하"을" 이라 한다)은 원일IPS 출 입관리전용 gate(이하 "물품"이라 한다.)제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다.

#### 제 1 조[계약의 목적]

"을"은 본 계약조건에 원익IPS 출입관리전용 gate를 제작, 납품,설치하며 도서관 검수 완료후 "갑"은 이를 승낙한다.

출입관리전용 gate는 양방향 3set, 더미 1set로 하며, 자세한 내용은 견적서에 의한다.

### 제 2 조[물품공급 형태 및 대금결재]

- 가. "을"이 "갑"에게 제공하는 "물품"이라함은 "을"이 생산하는 출입관리전용 gate와 일체 하드웨어 부속품을 칭하며 "갑"과 "을"이 합의한 견적서에 의한 다.
- 나. "을"은 "갑"에게 출입관리전용 gate 4set를 일천오백오십일만원 (₩15,510,000 부가세포함)에 공급키로 한다.
- 다. 물품의 대금은 계약후 "갑"이 일천오백 십일만원(₩15,510,000 부가세 포함)전액을 4월원(세일) 제급한다.
- 라. "을"은 "물품"의 하차에 대한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며 물품납품완료후 하자보 증보험 10%을 제출하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기로 한다.

## 제 3 조[계약기간 및 부속사항]
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년04월12일부터 2012년04월13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 4 조[부속사항]

본 계약에 따라 "을"은 제품의 품질과 납기를 준수해야 하며 "갑"은 대금결제를 "제2조" "다"항 에 따라 차질없이 지급해야 한다. 만약 양사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어 길시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상호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#### 제 5 조[혐의]

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규칙 등을 따로정할 수 있다.

# 제 6 조[분쟁의 처리]

제 5 조의 협의에 의하여도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"갑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.

#### 제 7 조[특약사항]

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첨의 견적서에 준하며, 계약서의 본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각기 기명 날인하여 "갑", "을"이 각각1통 씩을 보관한다.

2012. 04 . 12

(갑)

주식회사 원익IPS 3

대표이사 : 이 문교용

332-1번지

(을)

파스콘

대표이사 : 금

주 소 : 경기도 생활한 진위면 청호리 주 소 : 경기도 국전기 오정구 삼정동

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102동1207호